

■ ■ 가 정 법 원

화해권고결정

사 건 [REDACTED]

원 고 [REDACTED]

[REDACTED]
소송대리인 변호사 방효정

피 고 [REDACTED]

[REDACTED]
소송대리인 변호사 [REDACTED]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결정사항

1.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금 20,000,000원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다음 날까지 지급하되, 만일 이를 지체하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 이에 관하여 피고는 [REDACTED]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(구상금 청구권 포기),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[REDACTED] 수수한 구상금 상당액을 수수 다음 날까지 추가 지급한다.

한다.

4. 원고와 피고는 위 2.항 및 3.항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자가 상대방에게 위약금 30,000,000원을 지급한다.
5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구의 표시

청구취지 및 청구원인: 별지 소장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음.

※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,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